

산재보험 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① 산정기준

○ 입원환자 식대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9호, '15.9.9.)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0호, '15.9.9.)

- 단,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산재보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을 제공한 경우 산정

※ 치료식(멸균식) 처방내역 확인을 하고 식사를 제공받는 환자 또는 보호자(간병인 포함)를 대상으로 반드시 식사명, 제공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재한 경우 산정

- '15.10.1. 이후 제공되는 영양관리료는 '15.8.15.~9.14.까지의 환자수와 영양사 현황을 직전분기 현황으로 간주하여 '15.12.31.까지 산정

-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 수가로 치료식(멸균식)이 1일 1식 이상 제공된 경우 산정 가능하며, 치료식만 제공되고 영양관리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산정 불가

② 비용 산정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코드) 및 금액으로 산정

③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 인력현황 신고 방법(전산개발 전까지)

○ 진료비청구서 접수 전까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산개발 완료 전까지는 서면으로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진료비청구 화면에서 파일로 제출
토록 전산 개발 예정

※ 추후 전산 프로그램반영 완료 후 홈페이지 등 공지사항 게시 예정('16.3월 전산반영 예정)

○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통보서) 진료비청구서 접수 전까지
'별첨1 서식'으로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에 서면 제출

- (최초) 치료식(별균식)을 최초 제공하고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청구
하는 경우 진료비 청구서 접수 전까지 제출
- (분기통보) 다음 분기 적용할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 현황을 산정하여
3, 6, 9, 12월의 각 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4 적용일자: 2015.10. 1. 진료분 부터

☐5 진료비청구 항목

수가구분	항구분	목구분	항목번호
의치과	입원료	기본식대	0207
		가산식대	0208
한방	입원료	기본식대	0206
		가산식대	0207

별첨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통보서 1부

[별첨]

(앞쪽)

치료식 영양관리료[신규 · 변경] 운영현황 통보서

1. 신규
2. 변경 ※
3. 분기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코드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적용 구분	년 분기적용	최초 치료식(별균식 포함) 제공일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현황】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 구분(1.대상, 2.비대상)	(※)
① 치료식(별균식 포함) 환자수 (3개월 합계)	명
② 영양사수(3개월 재직일수의 합계)	일
③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별균식 포함) 환자수	명

【① 치료식(별균식 포함) 환자수 현황】

(단위: 명)

계	년 월 (전월15일 ~ 당월14일)	년 월 (전월15일 ~ 당월14일)	년 월 (전월15일 ~ 당월14일)

【② 영양사수 현황】

종별	면허 번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근무현황(년월일)				입·퇴사 휴가자 등 (※1~5)	근무형태 (※1:전일제, 2:단시간, 3:대체인력)
				입사일자	퇴사일자	휴 가			
				(최초 근무일자)	(최종 근무일자)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주)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치료식 영양관리료[신규·변경] 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적용기준】

- (치료식 영양관리료)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직전 분기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가능함. 이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는 환자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다음 분기에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대상으로 적용함.

적 용 분 기	산 정 분 기(환자수, 영양사수)
1분기(1월 ~ 3월)	전년도 9월 15일 ~ 전년도 12월 14일
2분기(4월 ~ 6월)	전년도 12월 15일 ~ 3월 14일
3분기(7월 ~ 9월)	3월 15일 ~ 6월 14일
4분기(10월 ~ 12월)	6월 15일 ~ 9월 14일

- '15.10.1. 이후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최초 제공하고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처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기관

최초제공일이 속한 분기	최초제공일이 속한 분기의 차기분기
최초제공일의 운영 현황으로 산정	최초제공일부터 해당 산정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기준으로 산정(단, 산정분기 마지막월 15일 이후 제공 기관은 최초제공일 현황으로 산정)

【제출시기】

- **신규통보:**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최초 제공하고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출
- **분기통보:** 다음 분기 적용할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 현황을 산정하여 3, 6, 9, 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환자수·영양사수 산정기준 및 방법】

- ①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수(3개월 합계) :** 대상기간 동안 치료식(멸균식 포함) 제공 환자수의 합계를 기재함
-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1일 2식 이하로 제공한 경우에도 모두 1명으로 산정함.
(예시: 10/1일 홍○○ - 치료식 1식, 강○○ - 치료식 3식을 제공한 경우 2명으로 산정함)
 - 동일날 동일 환자가 치료식과 멸균식을 제공받는 경우 1명으로 산정함.
- ② **영양사수 (3개월 재직일수의 합계)**
-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된 영양사로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14일까지 영양사별 재직일수의 합계
 - 영양사 인력 현황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작성요령과 동일함.
(단, 입원 환자식 평균 인원수 산정은 해당되지 않음)
- ③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수: 소수점 이하 절사**

$$\frac{\text{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수}}{\text{영양사수(3개월 재직일수의 합계)}} = \frac{\text{치료식(멸균식 포함) 제공 환자수 (3개월 합계)}}{\text{영양사수(3개월 재직일수의 합계)}}$$

<예시> 전일제 영양사가 전분기동안 80일 재직, 단시간(32시간이상~ 40시간 미만) 영양사가 전분기동안 50일 재직한 경우 영양사수 산정은 $\blacksquare$ (1인* 80일)+(0.8인*50일) = 80 + 40 = 120일